2025년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과내	기업의	기술·제품	포직	경쟁력	미	시뢰도	강화
'1 H ¬ ¬ .	1! -11	1 H —	/ I 2 / 11 m	\neg	000	ス	1! 41 4	04

□ 사업기간: 2025. 3. ~ 2025. 10.

□ **사업내용**: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분야 **검인증획득** 비용 지원

□ 지원규모: 7개사 내외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구분	지원내용						
		ESG 경영시스템 관련 ISO 인증(24개) 신규·갱신 취득 비용 지원					
	Е	ISO14001(환경경영), 50001(에너지경영), 46001(물효율관리), 14065(온실가스 검증), 14067(탄소 발자국), 14044(전과정평가), 13065(바이오에너지)					
ESG경영	S	ISO45001(안전보건경영), 13485(의료기기품질경영), 22301(비즈니스연속성관리), 27001(정보보안경영), 26000(사회적책임), 30415(인적 다양성), 37101(지속가능발전경영), 37106(공동체지속가능), 44001(비즈니스협업), 22000(식품안전경영), 42001(인공지능경영)					
	G	ISO37001(반부패경영), 37301(준법경영), 31000(리스크관리), 9001(품질경영), 20121(이벤트지속가능경영), 55001(자산경영)					
탄소중립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 탄소발자국 등 환경개선 관련 검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이외 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증은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매칭 비율 8:2)
 -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2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 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o '동일제품-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 o '동일제품-상이인증','상이제품-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0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0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검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부가가치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5인의 선정평가(서면)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추가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20점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40점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20점
	총계	100점

○ 가감점

	구 분							
			+1점					
가점	여성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	+1점						
		5천만원	-4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3천만원	-3점					
		3천만원 미만	-2점					
71-74		2천만원 미만	-1점					
감점		300억원	-4점					
	매출액	300억원 미만	-3점					
	(전년도)	200억원 미만	-2점					
		100억원 미민	-1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모집 및 홍보	•	선정평가(필요시) 실사협약체결	•	• 사업수행	•	• 검·인증 획득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3월		3~4월		4월~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 □ 신청기간: '25. 3. 6.(목) ~ 3. 21.(금), 17:00 까지
 -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 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 **문의처: 기업육성팀** 031-323-4640, hwlee@ypa.or.kr

6 유의사항

-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자체 수행 가능
 -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 제공서식 활용(PDF 파일 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각 1부	▶ (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행)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3	견적서		1부	 ▶ (대행) 업체 견적서 1부 ▶ (자체) 비용 안내 화면, 영수증 등 산정 증빙자료 제출 첨부 ▶ 획득 완료 후 신청 시, 계약서 등 제출
4	2024년 재무제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재무제표 발급 전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5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확인
6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각 1부	► 제공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제출(PDF파일로 제출)
9	해당시 가점서류		각 1부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 사업 선정 이후 제출서류

구분	추가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확약서	1부	▶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자서 너근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기흥의 야시
작성 서류	○ 확약서	진흥원 양식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ロルネのH おLOI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민원24
매출액 확인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그비청 호태소
	(손익계산서 必)	국세청 홈택스
	○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세금납부 확인	○ 71HFⅢ 나이즈RII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지방세 납입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2025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2025년 지원사업 안내문

1

2025년 지원사업 목록

구분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스카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חותו גומהו		
2	기술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미래산업팀		
3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4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5		TV 홈쇼핑 입점 지원			
6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7		공공조달 등록 지원			
8	마케팅·판로지원	마케팅 지원			
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 고이 O 서티		
10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소공인육성팀		
11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12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수출지원팀		
13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14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미래산업팀		
15		인증·특허 지원			
16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기어이사티		
17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육성팀		
18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19	사업화 지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20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21		ICT 디바이스 용인랩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소공인육성팀		
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24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수출지원팀		
25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사업화/마케팅 지원)			
26	창업지원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빨간색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 ex) 상반기 A사업 선정 \rightarrow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u>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u>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기간 내 관외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u>부가가치세와 은행 송금 수수료 지원 불가</u>
- <u>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u>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하며, <u>사업 외 목적으로</u>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